정하는 기간동안에는 경륜・경정・경마장 소재지에 80%, 장외발매소 소재지 50%를 안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시 신설 경륜・경정・경마장 소재지에 대한 시설재원의 투자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다.

21) 대도시외로의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규칙제115조)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써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공장의 범위를 500㎡이상에서 200㎡이상으로 하여 대도시외로의 공장이전이 촉진되도록 하였다.

Ⅲ. 맺음말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납세자 위주의 세제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세제의 형평성・중립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이번 세제개편 내용 중 무엇보다도 자동차 관련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성과라 할 수 있겠다. 자동차세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재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자동차 관련세제를 개편함으로써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에 대한 수년간의 논란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시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지방세 과세면제 및 감면범위의 축소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은 하였음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2001년 시행 개정지방세법령 해설이 독자 여러분들의 지방세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소 설명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지방세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